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해역의 위생관리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등 「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및 「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이 각각 개정(대통령령 제32475호, 2022. 2. 22, 공포·시행, 해양수산부령 제535호, 2022. 2. 22,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6항제3호 중 “제14조”를 “제14조, 제15조”로, “품질인증”을 “품질인증, 품질인증 유효기간”으로 하며,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17호의2 및 제1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8호 중 “법 제74조제1항”을 “법 제74조”로, “등록”을 “등록 및 변경 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0호 중 “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·가공시설등”을 “법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7항에 따른 생산·가공시설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30호 중 “법 제98조제1항”을 “법 제98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1호 중 “법 제99조제1항”을 “법 제99조”로, “지정”을 “지정 및 갱신 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35호의2를 제35호의3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의2. 법 제69조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·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고시

17. 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및 관리, 이행 사실 증명서류의 발급, 기술·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등

- 17의2. 법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의 지정 고시
- 17의3. 법 제72조에 따른 지정해역 위생관리종합대책 수립·시행, 자료 제출 요청, 대책수립 통보 및 필요한 조치의 요청 등
- 20의2. 법 제77조에 따른 지정해역의 지정해제
- 33의2. 법 제103조에 따른 안전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
- 35의2. 법 제113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·징수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2조(권한의 위임) ① ~ ⑤ (생략)	제42조(권한의 위임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.	⑥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<u>품질인증</u> 및 품질인증의 취소	3. 법 제14조,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<u>품질인증</u> , <u>품질인증의 유효기간</u> 및 <u>품질인증의 취소</u>
4. ~ 9의2. (생략)	4. ~ 9의2. (현행과 같음)
10. ~ 16. 삭제 <u><신설></u>	16의2. 법 제69조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·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고시
17.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	17. 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고시 및 관리, 이행 사실 증명서류의 발급, 기술·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등
<u><신설></u>	17의2. 법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의 지정 고시
<u><신설></u>	17의3. 법 제72조에 따른 지정

	<u>해역 위생관리종합대책 수립·</u> <u>시행, 자료제출 요청, 대책수</u> <u>립 통보 및 필요한 조치의 요</u> <u>청 등</u>
18. <u>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생</u> <u>산·가공시설등의 등록</u>	18. <u>법 제74조</u> ----- ----- <u>등록 및 변</u> <u>경 등</u>
19. (생 략)	19. (현행과 같음)
20. <u>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</u> <u>산·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기</u> <u>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</u> <u>에의 적합여부 조사·점검(위</u> <u>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합여</u> <u>부 조사·점검 중 생산단계·</u> <u>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</u> <u>기 이전 단계에 대해서는 법</u> <u>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</u> <u>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)</u> <u><신 설></u>	20. <u>법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</u> <u>까지, 제7항에 따른 생산·가</u> <u>공시설 등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의2. 법 제77조에 따른 지정</u> <u>해역의 지정해제</u>
21. ~ 29. (생 략)	21. ~ 29. (현행과 같음)
30. <u>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수</u> <u>산물 검정</u>	30. <u>법 제98조</u> ----- -----
30의2. (생 략)	30의2. (현행과 같음)
31. <u>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수</u> <u>산물검정기관의 지정</u>	31. <u>법 제99조</u> ----- ----- <u>지정 및 변경,</u>

	<u>갱신 등</u>
32. · 33. (생 략)	32. · 3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33의2. 법 제103조에 따른 안전</u> <u>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</u>
34. ~ 35. (생 략)	34. ~ 3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35의2. 법 제113조에 따른 수수</u> <u>료 감면·징수</u>
35의2. (생 략)	35의3. (현행 제35호의2와 같음)
36. · 37. (생 략)	36. · 37. (현행과 같음)
⑦ · ⑧ (생 략)	⑦ · ⑧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618